

글로벌 정크푸드세 정책트렌드 분석 및 주요국 동향조사

□ 글로벌 정크푸드세 정책동향

- (정크푸드세 개념) 햄버거, 핫도그와 같이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정크푸드에 사회보장 기여세 형식으로 추가로 부가하는 세금(설탕세 개념을 포함)
- (도입배경) 세수 증대와 국민건강이 목적
 - 정크푸드 소비 증가, 비만을 증가로 정크푸드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, 정크푸드 및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 또는 식품 소비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제시됨
 - 미국과 영국,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크푸드로 거두어들인 세수를 공공보건, 학교운영 등을 위해 사용
- (주요국 동향) 대체로 비만율이 높고 고칼로리, 고설탕을 다량 섭취하는 국가에서 정크푸드세 도입
 - 2017년 현재 정크푸드세 도입 국가는 미국 내 일부 주(州), 유럽 10여 개국, 인도, 태국, 필리핀, 멕시코, 칠레,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음

□ 북미 정책동향

- (미국)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만 설탕세를 부과, 정크푸드세는 나바호 자치구에서만 운영
- (캐나다) 2015년부터 설탕세 도입의 장단점과 실효성을 검토 중에 있음

〈북미 주요 지역별 정크푸드세/설탕세 도입현황〉

국가		세금명	도입연도	규제기준 및 기타 세부사항
미국	나바호 자치구	정크푸드세 (Junk-food Tax)	2014.2~	디저트, 튀긴 음식 및 청량음료에 2%의 추가 부과
	캘리포니아주 버클리	탄산음료세 (Soda Tax)	2015.3~	1온스 당 1센트 부과
	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	설탕 첨가 음료세 (Sugar-sweetened beverage tax)	2016.6~	1온스 당 1.5센트 부과
	워싱턴주 시애틀	감미료 음료세 (Sweetened Beverage Tax)	2018.1~	1온스 당 1.75센트 부과
	콜로라도주 볼더	설탕 첨가 음료세 (Sugar Sweetened Beverage Tax)	2017.7~	1온스 당 2센트 부과
	캘리포니아주 알바니	설탕 첨가 음료세 (Sugar Sweetened Beverage Tax)	2017.4~	1온스 당 1센트, 2020년까지 유예
	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	설탕 첨가 음료세 (Sugar Sweetened Beverage Tax)	2017.7~	1온스 당 1센트, 2020년까지 유예
	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	당분 함유 음료세 (Sugary Drinks Tax)	2018.6~	1온스 당 1센트, 2020년까지 유예
	일리노이주 쿡 카운티(시카고 포함)	가당음료세 (Sweetened Beverage Tax)	2016.11~ 2017.12	1온스 당 1센트, 2017년 12월 폐지
	메사추세츠주	설탕음료세 (Sugary Drink Tax)	2017.5~	1온스 당 설탕 19그램 미만 1센트, 20그램 이상 2센트 부과 검토 중
	텍사스주	탄산음료세 (Soda Tax)	2011.3~	판매세(6.25%) 과세대상 포함 여부 검토 중
	워싱턴주 워싱턴 DC	탄산음료세 (Soda Tax)	2018.11~	2018년 11월 주민 투표 예정
캐나다		설탕 첨가 음료세 (Sugar-Sweetened Beverage Tax)	2018.3~	검토 중

□ 유럽 정책동향

- (유럽 전체) 현재 유럽연합(EU) 내 국가 중 정크푸드세 도입국은 10여 개국에 이릅니다
- 최초로 정크푸드세를 도입한 덴마크는 도입 1년 만에 일자리 감소,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폐지
- 핀란드 역시 식품업계의 반발로 설탕세 일부가 폐지되는 등 유럽 내에서도 설탕세 및 정크푸드세의 도입 및 유지에 대한 찬반이 대립

<유럽 주요지역별 규제 도입 현황>

국가	세금명	적용기간	규제기준 및 기타 세부사항
덴마크	비만세 (Fat Tax)	2011.10 ~2012.11	포화지방 kg당 16크로네 부과, 현재 폐지
헝가리	포장 식품세 (Salty and Sugary Packaged Foods Tax)	2011.9.~	2011년 9월부터 청량음료·에너지음료, 설탕 및 소금이 많이 들어 간 식품에 정크푸드세 부과
핀란드	설탕세 (Sugar Tax)	2012.7~	과자류 및 아이스크림, 탄산음료 : kg당 95유로센트 부과, 리터당 11유로센트 부과, 2017년부터 과자 및 아이스크림만 폐지
노르웨이	초콜릿 및 설탕 제품세 (Chocolate and Sugar Products Tax)	1922~ (2018.1 개정)	초콜릿 및 설탕이 함유된 제품 : kg 당 36.92크로네 부과
프랑스	설탕세(도입) 정크푸드, 소금세 (검토 중) (Sugar Tax)	2012.1~	캔 당 판매 금액의 1% 부과 설탕세에 더하여 패스트푸드와 같은 정크푸드, 염분이 지나치게 많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
잉글랜드	설탕음료세(도입) 초콜릿세 (검토 중) (Sugary Drinks Tax)	2018.4~	100ml 당 설탕이 5g 함유된 음료 : 리터당 18펜스 부과 100ml 당 설탕이 8g 이상 함유된 음료 : 리터당 24펜스 부과 설탕세에 더하여 과자류에도 세금을 20% 부과하는 이른바 ‘초콜 릿 세금’의 도입을 검토 중
아일랜드	설탕세 (Sugar Tax)	2018.4~	100ml 당 설탕 5g의 음료 : 리터당 20센트 부과 100ml 당 설탕 8g 이상의 음료 : 리터당 30센트 부과

□ 아시아 정책동향

<아시아 주요지역별 정크푸드-설탕세 도입 현황>

국가	세금명	적용기간	규제기준 및 기타 세부사항
인도	지방세 (Fat Tax)	2017.7~ (Kerala 2016.7~ 2017.7)	고과당 간식류, 탄산음료 등에 대해 통합간접세라는 명목으로 고율의 세율을 부과 인도 남부 케랄라(Kerala)주에서 패스트푸드에 약 14.5% 부과를 해왔으나 통합간접세 도입으로 폐지
태국	신(新)설탕음료세 (New Sugar Tax on Beverages)	2017.10~	음료수(당분 음료, 커피, 차)를 대상으로 신 소비세를 적용해 세율을 높임
필리핀	설탕 첨가 음료세 (Sugar-Sweetened Beverage Tax)	2018.1~	설탕과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음료에는 리터당 6필리핀 페소, 고과당 시럽을 사용한 음료는 12필리핀 페소의 세금이 부과
대만	고설탕세 (High-Sugar Diet Tax)	2014.7~	검토 중

□ 기타국 정책동향

<기타 주요 국가별 정크푸드-설탕세 도입현황>

국가	세금명	적용기간	규제기준 및 기타 세부사항
멕시코	설탕세 (Sugar tax)	2014.1~	1리터당 1페소 부과
칠레	설탕세 (Sugar tax)	2014.10~	100ml 당 6.25 그램 또는 그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에 대해 13%에서 18%로 세금을 인상
아랍에미리트	설탕세 (Sugary drink tax)	2017.10~	탄산음료 50%와 에너지음료에 100%의 소비세를 부과

□ 한국수출기업 대응방안

-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트렌드와 국별 세금 정책에 알 맞는 제품 개발이 필요함
 - 팜유, 설탕, 트랜스지방 등 문제가 될 만한 성분의 함량을 줄이는 등 건강 친화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함
 - 제품 성분을 조정하는 것 외에 제품 가격, 용량, 포장 등에 변화를 주어 설탕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
- 국가별 수출 품목에 부과되는 세율을 사전에 숙지하고,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
 - 수출하는 국가의 정크푸드세, 설탕세 기준을 확인하여, 고세율의 제품 대신 저세율의 제품을 수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

□ 지역별 시장진출 대응전략

지역	세금분류
미국	설탕세의 경우 미국 각주별로 상이한 기준 및 세율이 적용되며, 주민투표 등에 의해 도입 이후 폐지되는 경우도 있음. 따라서 각주별 법령 및 도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
캐나다	캐나다의 설탕세 도입은 201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
덴마크	트랜스 지방의 양을 유지류 100g 당 2그램 이내로 제한하는 법률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유지류 수출 시 제품 원료 배합에 유의해야 함
헝가리	설탕 음료, 봉지사탕류, 아이스크림, 스낵, 식용 파우더 등 다양한 식품류에 각기 다른 비만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므로, 수출 전 세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
핀란드	핀란드 설탕세 적용 세율은 설탕 음료가 22유로센트, 감미료 음료가 11유로센트로 감미료 음료가 더 낮은 세율 적용
노르웨이	설탕이나 감미료가 포함되지 않은 초콜릿과 제과류에도 고세율이 부과되므로 대상 품목을 사전에 확인
프랑스	프랑스의 경우 탄산음료 한 캔에 1%의 설탕세 부과하므로, 수출 가격 책정 시 이를 고려할 것
인도	원재료에 따라 고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세율의 제품을 피하여 수출 제품을 선정할 것
태국	음료 수출 시 무설탕이거나 설탕 대체 성분 음료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
필리핀	수출 음료제조 시 고과당 시럽을 배제하고 설탕, 인공감미료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
대만	건강기능식품의 당류 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수출 시 당류 기준 충족 여부 확인
멕시코	비탄산 음료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과즙, 천연감미료, 과일주스, 건강음료 등이 유망
칠레	무알콜음료, 설탕 함유량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 품목 선정 시 유의
아랍에미리트	탄산음료 위주 소비에서 벗어나 에너지 드링크, 스포츠 및 건강음료 시장이 유망

